

최신 판례 예규

Marketing Tax consulting

포괄양수도에 의한 적법 법인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의 잔존감면기간이 그대로 승계됨

적격 법인 전환에 해당하면 개인사업자의 잔존 감면 기간을 승계함

서면법인-586, 2022.02.25

질 의

- 질의법인은 ○○○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개인사업자에서 '21.×월 포괄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법인임
 - 법인 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 자산이 없었음
(개인사업자는 컴퓨터, 비품 등 고정자산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이 없음)

질의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 자산이 없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전환 법인에 승계되는지 여부

회 신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법인 전환한 경우에 해당 중소기업 법인은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그 거주자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보청기 배터리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 보청기 적합관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구매자의 선택가능 여부, 보청기 공급과의 연관성, 공급시기, 별도의 대가 산정여부·지급시기 등을 구체적·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제과-126, 2022.03.04

질 의

- 장애인용 보청기 배터리 및 적합관리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회 신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보청기 배터리의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5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 보청기 적합관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구매자의 선택가능 여부, 보청기 공급과의 연관성, 공급시기, 별도의 대가 산정여부·지급시기 등을 구체적·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로 구성된 주상복합 건물 중 아파트부분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의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인 경우 해당 아파트부분의 입주자대표회의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사전법규법인-1320, 2022.01.19

질 의

- A법인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

는 단체로 승인받은 주상복합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임

* A법인은 상가(1층), 오피스텔(2층~12층), 아파트(13층~31층)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 중 해당 아파트 입주자의 대표회의이고, 해당 주상복합건물 중 상가와 오피스텔의 관리에 대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이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음

질의

• 주상복합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 산입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 중 아파트부분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의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인 경우 해당 아파트부분의 입주자대표회의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홍합을 진공포장하여 스팀에 찌서 식힌 후 냉동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홍합이 관세율표 번호 제030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법인-8101, 2022.02.25

질 의

• 질의인은 수산물 유통 판매사업자로 홍합을 구입하여 500g~3kg 단위 진공포장하여 스팀에 찌서

식힌 후 냉동포장하여 식자재마트 등에 납품할 예정임

• 현재 자숙홍합은 2가지 형태로 제조 및 판매하고 있는바

- ①생홍합을 진공포장지에 포장하여 스팀기에 찌서 식힌 후 냉동하여 포장한 제품을 공급(수분을 많이 함유, 육수를 함께 포장)

- ②생홍합을 10~20kg 이상을 스팀기에 찌서 수분을 충분히 빼고 냉동한 후 소포장 공급(수분 미포함, 외관상 수산물 고유 형태를 가짐)

질의

• 사업자가 홍합을 스팀에 찌서 식힌 후 냉동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 신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홍합에 열을 가하는 경우로서 당해 재화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